



서울교육대학교 - 성결대학교 학술 교류 협정서



서울교육대학교와 성결대학교(이하 “양 대학” 라 한다)는 교육, 연구, 정보,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교류·협력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우호 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.

제 1조(목적) 본 협정은 양 대학이 상호발전 및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각종 교류·협력 사업을 수행 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협력분야) 양 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호 교류·협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1. 교육 및 연구 인력의 상호 교류
2. 학생교류(대학원생 포함) 및 상호학점 인정
3. 공동강좌와 공동교육프로그램의 개발
4. 도서관 자료 및 연구 간행물의 교환을 포함한 학술정보의 교환
5. 대학생 현장실습(해외인턴) 관련 상호 협력
6. 세미나, 학술회의, 심포지움 등의 공동개최
7. 행정, 경영, 관리 등 학문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력
8. 시설 및 기자재의 공동사용
9. 대학 행정직원의 상호 친선방문
10. 기타 양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

제 3조(재정부담) 교류·협력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양 대학이 상호 합의하여 부담한다.

제 4조(협정기간) 본 협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며, 파기하지 않는 한 연속적으로 유효하다.

제 5조(협정의 변경 및 해지) 본 협정의 내용을 변경 혹은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여 상호 합의하여야 한다. 단, 협정내용이 변경 혹은 해지되는 경우에도 상호 협력이 진행 중인 사항은 그 사항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6조(권리·의무의 승계) 본 협정 양 대학의 명칭, 총장 등 단순 사항의 변동 발생시에도 협정에 따른 권리,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.

제 7조(보칙) 본 협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 대학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대학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1년 2월 23일

서울교육대학교
총장 송광용

송 광 용

성결대학교
총장 정상운

정 상 운